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① 법 제31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이라 한다)이란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1. 지정기준일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지정기준일 전년도 4월 1일 현재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3.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장이 지정기준일 2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학교법인
4. 그 밖에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학교법인을 지정할 때는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종류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 및 그 직후 3개 회계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을 지정회계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8항(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감사 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⑤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학교법인과 지정 예정 외부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학교법인은 지정 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⑩ 교육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⑫ 제8항(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위탁하며 사학기관감사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게 위탁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 회계연도 지정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실시 일정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22년 2월 28일
3.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재학생 수 산정 기준일: 2022년 4월 1일
4. 제1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학교법인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5. 제1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 기한: 2022년 9월 15일
6.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에 따른 지정 통지, 지정 예정 통지, 의견제출, 감사계약 기한: 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3조(2023 회계연도 지정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자료제출과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이 되기 위한 감사인 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교법인의 자료제출: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실시에 따라 부칙 제2조제4호의 일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학교법인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정외부감사인이 되기 위한 감사인 신청: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실시에 따라 부칙 제2조제5호의 일정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외부감사인은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 지정) ① 법 제31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이라 한다)이란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1. 지정기준일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지정기준일 전년도 4월 1일 현재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3.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을 거쳐 학교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장이 지정기준일 2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학교법인

4. 그 밖에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학교법인을 지정할 때는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종류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 및 그 직후 3개 회계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

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을 지정회계 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8항(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

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⑤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학교법인과 지정 예정 외부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⑩ 교육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⑫ 제8항(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위탁하며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중 사학기관감사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게 위탁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 문	소관부서	연락처
제14조의2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 203 - 6933